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1071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세종특별자치시 F 답 596m²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G(H생)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위 G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A과 위 G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위 G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21. 5.
25.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C와 위 G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D와 위 G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E와 위 G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G(H생)는 세종특별자치시 I, J, K, L, M, N, O, P, Q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9. 주식회사 R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G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8. 28.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2021년	양도소득세	2021. 4. 30.	2021. 8. 31.	624,150,260	794,330,590
2021년	양도소득세	2021. 4. 30.	2021. 10. 31.	624,150,260	784,754,690
합계	1,248,300,520	1,579,085,280			

나. G의 각 증여

① G는 처 A에게 2021. 6. 1. 세종특별자치시 F 답 59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또한 G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 B, E은 G의 아들이고, 피고 C, D은 G의 손녀, 손자이다.

A	2021. 5. 11.	30,000,000
B	2021. 5. 17.	20,000,000
2021. 5. 25.	30,000,000	
C	2021. 5. 17.	10,000,000
D	2021. 5. 11.	5,000,000
E	2021. 11. 29.	30,000,000

다. G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G의 적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① 2021. 5. 11.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공시지가, 이하 같음
예금채권	S조합(계좌번호 1 생략)	805,433,068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공시지가, 이하 같음
T조합(계좌번호 2 생략)	5,726,127	
U조합(계좌번호 3 생략)	97,025	
S조합(수표번호 V)	5,000,000	
수표	S조합(수표번호 W)	30,000,000
S조합(수표번호 X)	30,000,000	
S조합(수표번호 Y)	30,000,000	
S조합(수표번호 Z)	30,000,000	
합계	1,007,001,420	

② 2021. 5. 17.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S조합(계좌번호 1 생략)	413,278,495
T조합(계좌번호 2 생략)	2,726,127	
U조합(계좌번호 3 생략)	97,025	
수표	S조합(수표번호 X)	30,000,000
S조합(수표번호 Y)	30,000,000	
S조합(수표번호 Z)	30,000,000	
합계	576,846,847	

③ 2021. 5. 25.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S조합(계좌번호 1 생략)	205,730,835
T조합(계좌번호 2 생략)	2,726,127	
U조합(계좌번호 3 생략)	97,025	
수표	S조합(수표번호 Y)	30,000,000
S조합(수표번호 Z)	30,000,000	
합계	339,299,187	

④ 2021. 6. 1.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S조합(계좌번호 1 생략)	200,030,835
T조합 (계좌번호 2 생략)	208,006,127	
U조합(계좌번호 3 생략)	97,025	
수표	S조합(수표번호 Z)	30,000,000
합계	508,879,187	

⑤ 2021. 11. 29. 적극재산

예금채권	S조합(계좌번호 1 생략)	156,511
T조합 (계좌번호 2 생략)	8,170	
U조합(계좌번호 3 생략)	97,049	
수표	S조합(수표번호 Z)	30,000,000
합계	30,261,730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B, E은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선 후인 2023. 4.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G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G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을 각 증여한 행위는 G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G의 사해의사

G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G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이원신

1) 공시지가, 이하 같음